

착공 단계 이행업무 목록

연 번	이행 업무	비 고
1	착공(계)신고서	
2	직접시공계획서	
3	시공계획서	
4	품질관리(시험)계획서	
5	장비작업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8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9	하도급 계약 통보	
10	주요자재공급원	
11	시공(확인)측량 결과보고	

착공 단계 이행업무 세부내용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 고
착공(계) 신고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중배치 조회결과) 4.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6. 착공 전 사진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8. 관급·사급자재 수급계획서 9. 건설공사대장 <p>※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대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실착공 전 별도 제출 가능</p>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p>직접시공계획서</p>	<p>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25조의 5,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p>	<p>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p> <p>2.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p> <p>3. 예정공정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p> <p>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p> <p>(예외)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p> <p>②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예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p> </div>	<p>미통보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p>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p>시공계획서</p>	<p>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공사 세부공정표 4.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장비 동원계획 7. 주요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 10. 안전관리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2. 최초위험성평가서 	
<p>품질시험계획서</p>	<p>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별표9,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2. 품질시험계획: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수량, 시험빈도, 시험회수 등 3. 시험시설: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 평면도 등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성명, 등급,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 등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p> <p>②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p>미수립·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p>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장비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표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7, 제75조 별표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2.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3. 건설기계등록원부(등록증 및 검사증) 4. 건설기계 조종사 운전면허증 5. 건설기계 보험 가입 확인증 6. 장비 세부 제원표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p> <p>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 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p>안전관리계획서</p>	<p>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1,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공종: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 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건축설비공사, 해체공사, 타워크레인 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p> <p>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5)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계가 사용하는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향타 및 향발기 / 다. 타워크레인 <p>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2. 브라켓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p>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에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p>미수립·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p>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p>유해위험 방지계획서</p>	<p>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p>	<p>1. 공사 개요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이력 관리표 나. 공사 개요서 다.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 설계도면, 공사 위치도, 주변현황도, 지하매설물 현황도, 주변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관리계획 라. 전체 공정표 - 전체 공정표, 주요 대형사고 위험작업 일정표</p> <p>2. 안전보건경영계획 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 현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 안전보건회의 운영계획 - 안전점검계획 - 안전보건 교육계획 - 근로자 복지시설 계획 - 근로자 건강관리 계획</p> <p>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다.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p> <p>3.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가.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p>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p><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p> <p>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p> <p>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p> <p>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 창고시설 <p>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p> <p>4) 터널의 건설등 공사</p> <p>6) 길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p>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 사전승인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9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도급 승인 요청서(하도급 사유서, 동일업종간 하도급승낙서) 2. 하도급 계약 내역서 3.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 서류(하도급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p> <p>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div>	<p style="text-align: center;">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도급 계약 통보</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1조, 시행령 제32조, 제3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2.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3. 하도급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4. 공사 예정 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6. 하도급 현장대리인 이력 7.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8. 변경계약 시에는 변경이 있는 부분에 관한 서류 9. 기타 관련 서류 (직불합의서, 임금지급 이행각서 등)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p> <p>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p> <p>(예외)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p> </div>	<p style="text-align: center;">미통보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p>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주요자재공급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7조, 제8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원 승인 요청서 2. 공급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4. 자재납품 실적증명서 5. 제품카달로그 6. 공장등록증, 납세증명서 7. 시험성과대비표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7조</p> <p>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시공(확인)측량 결과보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5조, 제12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인측량의 목적과 순서, 확인측량 결과 2. 사용 측량기 제원 3. 측량 성과표, 측량도면 4. 수준측량야장 5. 점의조서 6. 측량 사진대지 	

시공 단계 이행업무 목록

연 번	이행 업무	비 고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분기별
2	환경보전비 사용 실적	분기별
3	상시(수시)위험성평가	
4	검측관리	
5	실정보고	
6	설계변경 도서	
7	기성검사원	

시공 단계 이행업무 세부내용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 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항목별 사용 내역 2.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 서류(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4. 사진대지(감독자 검수사진 포함) 5. 물품 검수대장 및 개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6. 인건비 지급 명세서 및 내역서, 작업내용, 사진대지 	분기별
환경보전비 사용 실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비 사용 내역서 및 항목별 사용 내역 2.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사진대지(감독자 검수사진 포함) 4. 물품 검수대장 및 개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5. 인건비 지급 명세서 및 내역서, 작업내용, 사진대지 	분기별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고
상시(수시)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시행규칙 3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검측관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 제13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측대장 2. 검측요청서 3. 공사참여자실명부 	
실정보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2조, 제14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정보고서(변경사유, 개략물량 및 개략공사비 증감) 2. 실정보고 내역서 및 단가산출 근거 3. 수량산출서 4. 관련도면 5. 현장조사 사진대지 	
설계변경 도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48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기성부분 검사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식 기성검사 : 감독조서, 기성내역서 2. 기성검사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시공 후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발생품 정리부 	

준공 단계 이행업무 목록

연 번	이행 업무	비 고
1	예비준공검사 조치결과	
2	준공검사원	

준공 단계 이행업무 세부내용

이행업무	관련법령	포함내용	비 고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8조②	1. 지적사항 조치계획 2. 사진 등 기타 필요 서류	
준공검사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1조, 162조	1. 준공내역서, 도면 2.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3. 매몰부분 검사기록 서류, 사진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5. 발생품 정리부, 지급자재 잉여 조치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7. 환경보전비 정산서류 8.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영수증 9. 폐기물 관련서류 10. 각종 시험성적서 11. 안전관련 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12. 공사의 검측, 확인 서류 13. 기타 필요 서류	